

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임규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244
----------	------

발의 년 월 일: 2025년 10월 20일

발의자: 임규호 의원(1명)

찬성자: 김성준, 김용호, 김원태,
박강산, 박수빈, 박승진,
박칠성, 서상열, 송도호,
송재혁, 신복자, 오금란,
왕정순, 유정희, 이민옥,
이상욱, 이영실, 이용균,
임종국, 최재란, 한신,
허훈, 홍국표 의원(23명)

1. 제안이유

-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도모를 위해 서울시의 자전거 지도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자전거도로 전자지도를 활용한 ICT 기반 안내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함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3(자전거 전자지도 구축)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 전자지도를 구축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자전거도로 전자지도를 활용한 ICT 기반 안내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15조의3(자전거 전자지도 구축)</u></p> <p><u>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 전자지도를 구축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시장은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자전거도로 전자지도를 활용한 ICT 기반 안내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부서(디지털도시국 공간정보과)에서 기시행중인 사업(자전거 전자지도 구축)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.
- 단, 참고자료로 스마트서울맵¹⁾상 자전거 전자지도 현황을 첨부하였음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 이선희
추계세제팀장 김중현
추계분석관 이설희
☎ 02-2180-7952
e-mail : sseol789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기존의 서울시 행정정보를 '지도'에 담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

[붙임] 스마트서울맵상 자전거 전자지도 현황 (웹주소: <https://map.seoul.go.kr>)

